

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의 2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50조중 “사업소장·실장·국장 등”을 “시설관리사 등”으로 한다.

제51조에 본문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를 신설하고, 같은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제4호는 이를 삭제한다.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이자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 ④(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 ⑤(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57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4조·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액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 기타 수입금

<p>제 3 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재난위협시설등(서울특별시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협시설물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영 제2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등(서울특별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 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p>제 4 조(기금의 관리·운영)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탁·관리한다.</p> <p>③영 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용자의 절차·방법·조건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금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 5 조(기금운용관 등)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p> <p>②기금운용관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소방방재본부 방재기획과 기금담당</p>	<p>사무관(이하 "기금담당사무관"이라 한다)이 된다.</p> <p>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 6 조(회계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p> <p>제 7 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리 또는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계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④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 8 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 9 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p> <p>②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p> <p>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 10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p>
---	---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공적”이라 함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라 함은 시와 소속행정기관·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또는 자치구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

제 3 조(지급대상) 시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시의 행정발전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금품수수 행위
2.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제 4 조(보상금지급대상자 선정) 시장은 보상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시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상금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시기·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특별공적에의 해당여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

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보상금 지급제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부조리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조(환수) 시장은 보상을 지급한 후에 제 6조에 의한 보상금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신고대상별 보상금지급기준(제5조 관련)

구분 번호	지 급 기 준	보 상 금
1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2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	30만원
3	기타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0만원

.....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중 “7인의”를 “7인이내의”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중 “공보관·시의원”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공보관”으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